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법제사법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1월 4일, 전용기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3. 12.)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9. 23.) 상정 ·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9. 24.)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전용기의원)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 · 심리 또는 피해아

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임시조치로 부과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의 초기 단계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에 효과적이므로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은정)

현행법은 보호처분으로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제4호부터 제8호까지)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보호처분과 유사한 내용의 임시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중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 등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음.

따라서 개정안이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사한 보호조치 불이행의 경우와 동일하게

제재하려는 것은 타당한 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위탁 등을 미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러한 유형의 임시조치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김용민위원)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임시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시조치로 부과된 상담 및 교육 위탁을 미이행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사한 임시조치인 의료기관 등 위탁을 미이행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동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의결하였음.

6. 심사결과

수정의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법원이 임시조치로 상담 및 교육 위탁을 결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등 위탁을 결정한 경우에도 그 임시조치를 미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수정주요내용

법원이 임시조치로 의료기관 등 위탁을 결정하였음에도 이를 미이행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 제1항제4호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3조제1항제4호의2 중 “제19조제1항제5호”를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3조(과태료) ① -- ----- ----- ----- ----- -----.	제63조(과태료) ①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u>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u>	<u>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u>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5.·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3조(과태료) ①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u> <u>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u> <u>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u> <u>한 사람</u>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